

「2024년 글로벌 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」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

지역소멸위기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「2024년 글로벌 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」의 지원대상자(소상공인)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8월 12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* 참여 소상공인 모집 및 선정은 주관기관(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)에 위탁하여 진행

‘2024년 글로벌 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’은 중소벤처기업부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(개인)의 일환으로, ‘20~’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(개인) 기존 수혜자는 신청 불가하며, 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*과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

* ① 로컬크리에이터(개인), ② 로컬크리에이터(협업), ③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, ④ 로컬브랜드 창출팀 대표 및 팀원기업, ⑤ 글로벌상권 창출팀 대표 및 팀원기업

1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‘24년 글로벌 상권으로 선정된 지역의 자원·문화를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·육성
- 사업기간 :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(선정일 ~ ’24. 12월(예정))
- 지원대상 : 사업장 소재지가 ‘24년 글로벌 상권 구역에 위치해있으며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*

* 사업신청일 기준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
글로벌 상권 정의

◆ '글로벌 상권'이란 로컬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·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상권으로, '24년 '글로벌 상권 창출팀 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235)' 사업에 선정된 상권을 의미

< 글로벌 상권 인정 구역(행정동) >

- 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, 지동, 매산동, 고등동, 화서1동, 영화동, 연무동, 인계동, 매교동
 - ②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, 풍남동, 노송동, 중화산1동
 - ③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, 정량동, 도천동, 명정동, 북신동
- * 글로벌 상권별 세부 인정 구역 세부 내용은 [참고3] 참고

로컬크리에이터 정의

◆ 정의 : '지역의 자연·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'

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'지역가치 창업가'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

7대 유형	① 지역가치	② 로컬푸드	③ 지역기반제조	④ 지역특화관광
	⑤ 거점브랜드	⑥ 디지털문화체험	⑦ 자연친화활동	

* 세부내역은 [참고1]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

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

- 지역의 유·무형 자원 (역사전통, 문화예술, 자연생태, 생활문화, 지역특산물 등)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

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

-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

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, 지역 내 고용창출,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□ 지원규모 : 총 24개사 내외

< 글로벌 상권별 모집 규모 >

경기(수원)	전북(전주)	경남(통영)	계
8	8	8	24

* 단, 지원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 최대 4천만원

-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2

세부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 최대 4천만원

-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

*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

**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

- 총 사업비 구성 : 정부지원금(80% 이하) + 신청기업 자부담금(20% 이상)

구분	총 사업비	정부지원금	자부담금
비율	100%	총 사업비의 80% 이하	총 사업비의 20% 이상
예시	4,800만원	4,000만원	800만원(현금 또는 현물*)

* (현물) 신청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

< 사업비(총사업비) 집행항목 세부사항 >

집행항목	집행내역	비고
개발	○ 신제품 개발, 제품/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	
브랜드	○ 브랜드(CI, BI), 디자인 등 용역비	
홍보	○ 마케팅·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,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	
기타	○ 행사 운영, 시설환경개선 등 용역비	
인건비	○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○ 직접 상시·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	자부담금(현물)만 가능
수수료 및 사용료	○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○ 브랜드(CI·BI)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○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	
광고선전비	○ 온·오프라인 광고 선전, 언론게시 등을 위한 비용	
전문가활용비	○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	
임차비	○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, 장비 임차비 ○ 사업장 역할·기능을 하는 임차비(월세 등)	자부담금(현물)만 가능
재료구입비	○ 신제품개발, 제품/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	
사업활동비	○ 역량개발,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·학회·교육 등 참가비	

*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

◆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

- 1) 사업비는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통해 집행 가능
- 2)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
- 3)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(사업비카드)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
- 4)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
- 5)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
- 6)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거래는 불가함
- 7)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하며,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 할 수 없음
- 8) 당해연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*에 참여하는 소상공인(팀원기업 포함) 간 거래 불가
* 로컬크리에이터(개인, 협업), 로컬브랜드 창출팀, 글로벌상권 창출팀

□ 우대지원 : 아래 5가지 우대 조건 중 최대 점수 1건만 인정(중복 불가)

- (중소벤처기업부)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(5점), ② 사업장소재지가 [별첨3] 지역발전특구 내 위치하고 사업 아이템이 해당 특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(1점)
- (타부처) ①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(3점),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(3점) ③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(3점)

◆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중 '23년 IP 창출 종합패키지 수혜자

- (증빙)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의 수혜사실 확인서류(공문)

◆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

- (관련지역)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도시(24곳)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(13곳)
- (자격)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1건 이상 또는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(사람, 업체 포함)
- (증빙)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, 참여 기간, 참여내용 및 역할,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

◆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

- (자격)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자(2021~2023년)
- (증빙)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 확인서

□ 연계 지원

- 로컬크리에이터 수혜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혁신성장촉진자금’, ‘우리동네 클라우드 펀딩’ 및 ‘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’,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’ 신청 시 연계 지원
*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혁신성장촉진자금(최대 1억원), 매칭융자(최대 5억원), (신용보증재단중앙회)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(최대 2억원)

3

신청 및 접수

- **공고일** : 2024년 8월 12일(월) ~ 8월 30일(금), 16:00 까지
 - **신청기간** : 2024년 8월 12일(월) 10:00 ~ 8월 30일(금), 16:00까지
 - *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가 급증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, **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후 신청결과 확인하는 것을 권고.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메일 오발송 및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**
- **신청방법** :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필수 서류를 작성·발급하여 사업 주관기관(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) E-메일 접수
 - **신청 e-mail 주소** : sj_local@ccei.kr
 - *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·삭제 불가
- **신청지역** : 제품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활용하는 지역자원·문화의 소재 지역(수원, 전주, 통영)*을 선택하여 신청
 - *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
- **제출서류** : ① ~ ③ 필수서류는 공고문 내 서식 양식을 활용하며, ④ ~ ⑧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후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

구분	제출서류명	비고
필수	1 사업신청서	[서식1]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
	2 사업계획서	[서식2]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
	3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[서식3]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
	4 (개인) 사업자등록증명원 (법인)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	해당 서류 발급 후 첨부파일 제출
	5 소상공인확인서 *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'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·소상공인)'	
	6 (개인) 국세 납세증명서, (법인) 국세 납세증명서	
	7 (개인) 지방세 납세증명서, (법인) 지방세 납세증명서	
선택	8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	해당 서류 발급 후 첨부파일 제출

◆ 유의사항

- 1) 제출서류는 **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**에 한하여 인정
- 2) **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**은 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신청지역으로 확인 되어야 함(단,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할 경우는 추후 서류 제출)
- 3) **소상공인확인서**는 '(소기업·소상공인)'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
 - * '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' 인정불가
 - ** 소상공인이 직접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사이트를 통해 발급하여 업로드해야함(5일~10내외 소요될 수 있음) ☎ 소상공인확인서 문의처 : 1811-6508
- 4) 우대요건 증빙서류 중 **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확인서류**는 수료증만 인정(선정서X)
 - *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(<http://newbiz.sbiz.or.kr>)-마이페이지를 통해 발급

□ 신청자격 :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
구분	세부요건
신청 자격	<p>①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*</p> <p>◆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소상공인확인서'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</p> <p>* 소상공인확인서 :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·소상공인) 서류를 의미하며,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[별첨1], [별첨2] 참고</p>
신청 제외대상	<p>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</p> <p>* [참고4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</p> <p>② '20~'24년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</p> <p>* 로컬크리에이터(개인, 협업), 로컬브랜드 창출팀, 글로벌상권 창출팀</p> <p>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</p> <p>*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·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,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</p> <p>** 단,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</p> <p>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</p> <p>* 단,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,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(지원) 가능</p> <p>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</p> <p>⑥ 신청일 현재 '기업의 부도, 휴·폐업' 중인 자(기업)</p> <p>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</p> <p>*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 등) 및 기업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,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</p> <p>⑧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단체 또는 조합</p> <p>* 사업자등록증 가운데 두 자리가 82또는 83인 경우 신청불가</p> <p>**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신청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(비영리법인이 '예비사회적기업'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)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(연합회), 사회적협동조합(연합회)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조합(연합회)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(연합회),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<2021.4.21. 시행> <p>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</p>

4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절차 :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선정

① 서류 평가	② 발표평가	③ 최종선정
서류평가(100+가점)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	10분 발표, 10분 이상 질의응답	'발표평가(100점)'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(단, 60점 미만 제외)

*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하며,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

□ 평가 방법

-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(가점 반영)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(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 선정
 -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%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

< 서류평가 평가지표 >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지역성(50)	• 지역·상권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	25점
	• 지역·상권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	25점
성장 가능성(50)	• 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(필요성)	15점
	• 사업화 전략,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	20점
	• 자금 조달·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, 성과창출 전략	10점
	• 대표자 및 조직구성원의 전문 역량	5점

< 서류평가 우대(가점)사항 >

구분	연계사업	가점
1	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수혜자	5
2	지역발전특구 내 사업장 소재지 위치한 경우	1
3	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수혜자	3
4	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사업 수혜자	3
5	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 수혜자	3

*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에만 반영하고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이며 미제출 시 불인정

- 발표평가 :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(사업성 등)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

* 발표평가(PT 양식, 지표 등)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,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최종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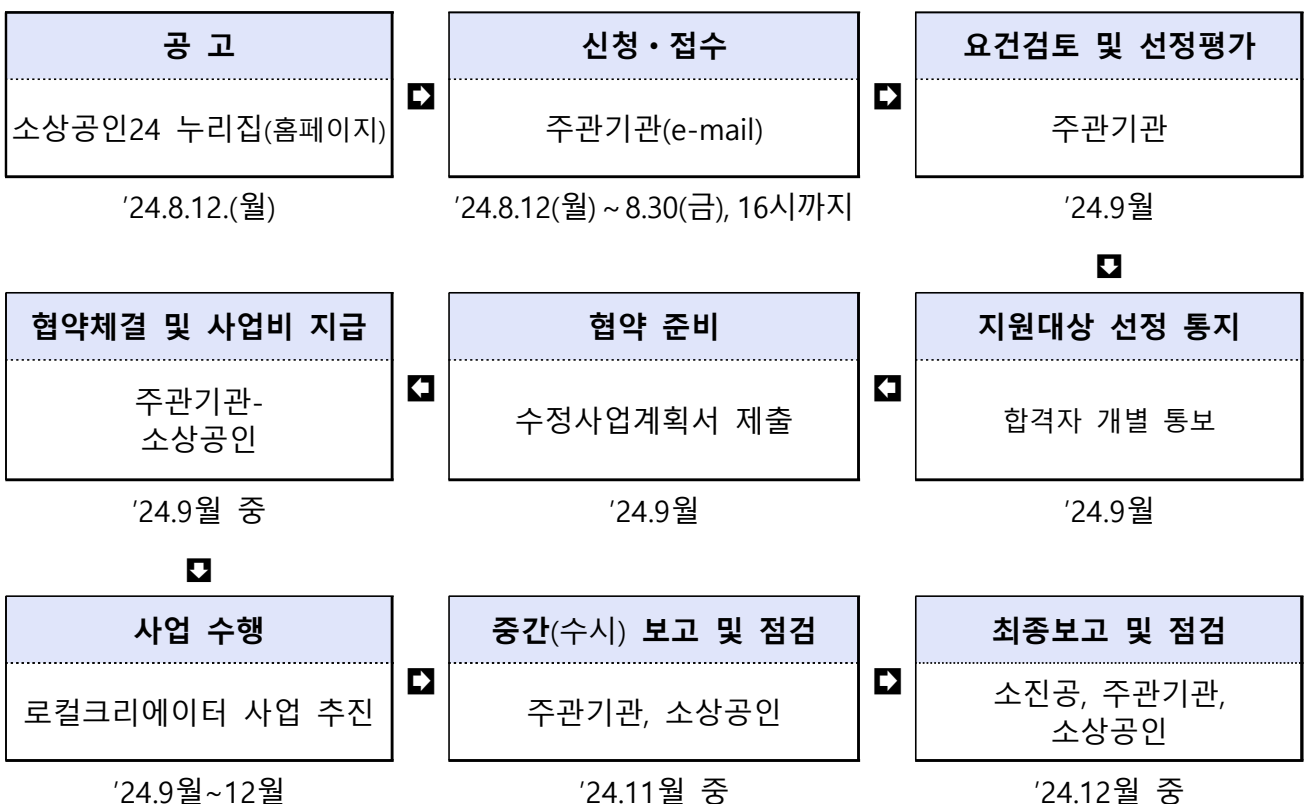
-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정부지원금 배정

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배정

**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추진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◆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이 부과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**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**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소상공인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교부·집행·정산·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-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
- 선정자는 동 공고문, 세부관리기준, 전담기관,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동 사업 신청 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타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
-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·표절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)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의 수시·중간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및 주요사례

◆ 정의 : "부정수급"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

◆ 주요사례

- ① **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**
- ②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
- ③ 사업 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
- ④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
- ⑤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

사업문의

- 주관기관(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) 사업담당자

주관기관명	연락처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	044-999-1084
	044-998-0745